

 신안산대학교	<b>대학자체평가 규정</b>	규정번호 2-1-13 제정일자 2019. 6. 23. 개정일자 2024.3.20. 책임부서/팀·계 기획처
---	------------------	---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라 신안산대학교의 교육·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 대학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·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발전계획과 전략수립 등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19.11.14.개정>

**제2조(평가원칙)** 평가는 객관성·공정성·신뢰성이 있어야 한다.

**제3조(평가대상)** 평가대상은 신안산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운영전반을 대상으로 한다. <2019.11.14.개정>

**제4조(평가영역)** 평가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한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·연구 영역
2. 조직·운영 영역
3. 시설·설비 영역
4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

**제5조(항목별 평가)** 평가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, 항목별 평가점수의 산출기준, 항목별 평가등급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6조(평가시기)** 평가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되, 평가 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<2009.12.7.개정> <2020.03.12.개정>

## 제2장 평가기구

**제7조(평가관)** ① 자체평가의 총괄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평가관을 둔다.

② 평가관은 기획처장이 당연직으로 한다. <2021.08.20.개정>

③ 평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체평가업무 총괄
2. 자체평가 역량향상
3. 평가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
4. 자체평가 영역 및 반영비율 개발

④ 자체평가의 기획·운영·조정·관리에 관한 업무는 기획처에서 담당한다. <2021.08.20.개정>

**제8조(자체평가위원회)** ①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“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평가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.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당연직 : 기획처장, 교무처장, 대외협력처장, 사무처장 <2021.08.20.개정> <2023. 3. 30. 개정> <2024.3.20. 개정>

2. 위촉직 : 교직원 5인 이내로 구성하며, 노동조합지부주체 1인을 포함한다.

<2009.12.7.개정> <2020.3.12. 개정> <2021.08.20.개정> <2023. 3. 30. 개정>

③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며,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당연직 : 보직재임기간

2. 위촉직 : 1년

<2020.3.12. 개정> <2021.08.20.개정><2022.03.31.개정>

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대학자체평가 심사

2. 대학자체평가 심사서 작성

3. 평가위원회 운영

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, 재적위원 1/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회의록)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으며,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10조(간사)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11조(실무위원회) 자체평가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평가영역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### 제3장 평가방법 및 절차

제12조(평가계획 수립) 기획처는 제6조 평가시기에 따라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며, 평가계획을 행정부서 및 학부(과)에 통지한다. <2009.12.7.개정> <2020.3.12. 개정> <2021.08.20.개정>

제13조(평가자료 제출) 평가실시 1개월 전까지 행정부서 및 학과는 기획처에 평가 자료를 제출한다. <2021.08.20.개정>

제14조(평가실시) ① 기획처에서는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한다. <2021.08.20.개정>

② 평가위원회는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한다.

제15조(실사) 평가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해당부서 및 학과에 실사를 할 수 있다.

제16조(평가결과 보고) 평가관은 작성한 평가 자료와 행정부서 및 학과의 서류를 확인한 후 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는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03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